

#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운용체제

## 1. 개 요

### □ 근 거

#### ○ 지방재정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

-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,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

#### ○ 지방재정법 제36조(예산의 편성)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·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함

#### ○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(투자사업비 등)

-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·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재정 투·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 예산에 계상

### □ 성 격

- 중·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·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(Rolling Plan)으로 운영
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·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, 주요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

○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향 제시

-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 및 재정 여건 변동 등을 토대로 분야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
- 중·장기적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

○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 강화

-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가시책 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

○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·효율성 제고

□ 계획의 내용

○ 계획기간



○ 계획의 범위 : 일반회계 + 특별회계

○ 수립방법 :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

○ 수립기준

- '10년도 예산 :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'10년도 최종 예산안
- '11년도 이후 : '09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·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

※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(최종예산 기준)와 의회제출(당초예산 기준)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
○ 수립대상 : 총사업비 20억원(행사성 3억원) 이상 사업

※ 행정안전부 기준 : '10년 당초예산 3,0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(행사성 3억원) 이상 사업

※'09년 연례반복사업은 미포함하였으나 '10년부터 포함 계획 수립

## 2. 계획의 수립 및 운용체계

